



선진납세문화로 만드는 경직하고 아름다운 미래! 稅美未來

국 세 청

한국세관
대통령국세청

수신자 대용량 연계사업자

(경유) (3) 대용량

제목 대용량 연계사업자에 대한 협조사항 안내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경제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부분의 법인사업자가 발행에 참여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발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건당 100원에서 200원의 발급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2010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

3. 2010.10.1~10.25일은 2010.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으로 대용량 연계사업자는 거래처(매입자)가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 작성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기에 전송하여 주시고, 자료공유 제도·발행즉시 전송 등 불임 「대용량 연계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용량 연계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1부, 끝.

국 세 청



서부주사 함민규 행정사무관 최원봉 ★전자세원과장

전표 10/06

김형준

협조자

시행: 전자세원과-544 (2010. 10. 06.) 접수:

우 110-705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11층 전자세원과 / <http://www.nts.go.kr>

대용량 연계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방법과 가산세

□ 합계표 작성방법

- 국세청 전송분과 종이세금계산서(국세청 미전송분 포함) 구분 기재
 - 전자발행 후 국세청에 전송한 세금계산서는 합계표상 "전자분"으로 기재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발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전자외 분"으로 작성하고 거래처별 명세서 제출

□ 합계표 오류와 가산세

- 국세청 전송분에 대해 "전자외 분"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합계표 제작성 필요
- 국세청 미전송분에 대해 "전자분"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

□ 합계표 오류 발생원인

- 세법상 필요 없는 승인기능 서비스
 - 세금계산서 발행완료 시점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있으면 되므로 승인 전에 이미 발행성립
- 매출자가 발행 후 미전송
 - 국세청에 당연히 전송된 것으로 매입자는 알고 "전자분"으로 기재하였으나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미전송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세청 미전송
- 일명 "역발행" (또는 발행체널 강요행위) 반연
 - 대기업 등에 의해 역발행 제도가 만연하여 거래 상대방이 많은 매출자는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발행으로 발행된 매입자로 미전송

○ 국세청 지연전송 발생

- 발행즉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가지고 전송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준비 시점마다 「e세로」 금액차이 발생

2. 대용량 연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승인여부 상관없이 (개인사업자 발행분 포함) 즉시 전송

- ◆ 당일 전송하지 않은 연계사업자에 대해 안내메시지 발송 또는 개별관리 실시
- ◆ 이행상황 점검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고시 제8조, 제9조)

○ 전자세금계산서 즉시 발행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하므로 매입자의 승인여부로 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
- 수신시기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입자가 관리하는 전자 우편주소에 인력된 때임(부기기자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7항, 제8항)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즉시 전송

- 즉시 전송으로 프로그램 관리비용 및 위험부담 감소
- 승인여부, 일정에 따른 전송, 미전송 자료 등 누적관리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며 예측하지 못한 오류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감소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즉시 전송이 원칙이며 다음달 15일까지의 전송기한은 예외적 상황(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장애 등)을 대비한 규정임
- 즉시 전송이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에게 유리
- 지연전송·미전송이 사라져 합계표 작성에 있어 오류 없이 부가 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시 자료 미전송에 따른 불이익 방지

자료 공유제도(전용사서함과 공개키 등록) 참여 및 사업자 홍보

- ◆ 발행채널 강요행위 신고센터 개설 예정
- ◆ 자료공유 제도 미참여 또는 방해를 하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고시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역발행 제도 또는 발행채널 강요로 매출자 민원 발생

- 매출자는 여러 발행채널을 이용하여 발행을 하게 됨으로써 발급비용이 상승하고 매출자료 관리가 되지 않아 역발행 요구 행위에 대하여 민원 발생되므로 강요 금지

자료 공유제도는 매출자·매입자 모두 만족

- 대용량 연계사업자간 자료공유를 하게 함으로써 매출자는 발행채널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매입자는 매출자와 다툼 없이 자신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자료관리 가능

모든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참여가 필수

- 대용량 연계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자 이메일란에 전용사서함 기재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전용사서함을 등록한 사업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발송하여야 함
- ASP사업자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ERP사업자는 자사 및 타사의 전용사서함과 공개키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출세금계산서 시스템으로만 운영하는 ERP사업자는 「e세로」에 등록된 타인의 전용사서함과 공개키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출세금계산서 시스템만을 갖춘 ERP사업자는 매입처 요구시 발행을 위하여 타 ASP나 ERP사업자가 등록한 전용사서함과 공개키 관리 필요

자료공유 제도 이용방법에 대해 사업자(고객, 회원사 등) 홍보

공인인증서 유효성 검증 및 체제변경 대비

- ◆ 공인인증서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거나 체제변경을 못하는 경우 표준인증 취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인인증서 유효성 반드시 검증
 - 전자서명법 개정안에서는 CRL방식이 아닌 실시간 공인인증서 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 2011년부터 공인인증서 체제변경에 따라 공인인증서 종류별 전자서명 생성방식 변경 준비(2011년에는 기존체제와 신체제 유지, 2012년부터는 단일체제)
 - 자세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 또는 표준인증을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

3. '10.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비

- 기존 미전송분 또는 전송해야 할 분 2010.10.13.까지 반드시 전송하고 부득이하게 전송을 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안내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미전송분 포함)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합계표 구분기재 방법 홈페이지 안내
- 납세자가 프린트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e세로」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파일출력시 표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하고 반드시 24자리 "승인번호"(자체 관리번호가 아님) 표시

- 붙임 :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 별첨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별지 제20호의2서식(1)] <개정 2010.3.31> (앞 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년
기)

1. 제출자 인적사항

(1)사업자등록번호	- - -	(2)상호(영문명)	
(3)설명(대표자)		(4)사업장소재지	
(5)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6)작성일자	년 월 일

2. 매출세금계산서 종합계

구 분	(7) 매 출 처 수	(8) 매 수	(9)공급가액		(10)세 액	
			조	설	액	반
합 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한분만 기재			간수, 금액 등은 0-세로에서 확인하고 입력	
소 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전자발급분 중 미전송분 및 수동발급분을 기재			간수, 금액 등은 3번 명세서 금액을 짝계하여 기재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용)

(11) 일련 번호	(12)사업자 등록번호	(13)상호 (영문명)	(14) 매수	(15)종 류 가 액 조 합 과 세 액 원 일	(16)세 액 조 설 액 반 원 일	비고
1						
2						
()쪽						
•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